

개정 農藥管理法 해설

안
병
규
농수산부
식물방역과

총론

개정목적 및 기본방향

개정농약관리법은 80. 12. 31 법률 제 3322호로 공포되었다.

'77. 12. 31 법률제 3064호로 전면개정된 농약관리법을 이번에 다시금 전면 개정하게 된 것은 농약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과 국민보건에 미치는 위험성을 방지하고 농약의 유통체계 정비 및 우수농약 개발시험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농약관리와 농약생산의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

1) 농약의 수급과 유통질서 유지

농약은 병충해 발생의 사전예측이 지난하고 대부분의 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계로 수급의 불균형과 유통질서 문란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농약제조업자, 수입업자, 원제업자, 판매업자에 대한 유통질서 유지 명령권을 신설하여 농약의 적기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 농약의 품목고시제 도입

종전에는 동일한 성분의 농약에 대하여 제조회사가 각각 개별적인

○ 개정 농약관리법 해설 ○

시험을 거친 후 허가받도록 되어있던 것을 개정농약관리법에서는 농수산부장관이 농약의 품목을 고시토록 하고 고시하지 아니한 농약은 수입제조,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약효저하농약 등 문제품목을 품목고시때 제외함으로써 우수농약을 선별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자 하였다.

3) 품목고시를 위한 시험

농약의 품목고시를 위한 시험은 전문시험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약효, 약해, 독성 및 잔류성에 관한 시험을 실시토록하여 시험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제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험하던 것을 농촌진흥청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시험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농약 개발에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서도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농약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농약의 품목고시는 관계기관, 학계, 업계, 실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농약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하도록하였다. 농약관리위원회는 이외에도 농약의 시험기준과 방법,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농약

의 검사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토록함으로써 농약관리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5) 농약제조업의 자유경쟁유도

농약의 제조, 수입은 종전에는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품목별로 개별적 허가를 얻은 후 생산하던 것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고시한 품목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등록만하면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경쟁을 유도하였다. 또한 제조업자, 수입업자의 요건 및 시설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약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하였다.

6) 관리·감독 기능 강화

농약판매업과 방제업은 농약의 적정하고 올바른 취급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감안, 등록제로 전환하여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수출입식품 방제업은 국립식품검역소장에게 등록토록 함으로써 권한과 감독책임을 일원화하였다.

또한 농약제조업, 수입업, 원제업 판매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취소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 필요한 경우 경고 또는 영업정지등의 요건을 정함으로써 관리감독 기능을 일층 강화하였으며 농약에

대한 허위광고와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광고의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과대선전으로 인한 농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사용기준에 의한 적절한 농약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7)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기준

농약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잔류성에 의한 국민건강과 환경오염이 문제점으로 점차 대두되고 있으며 농약의 취급 잘못으로 인한 농약 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농약의 품목별 사용대상 또는 사용제한이 되는 농작물의 명칭, 사용방법, 사용시기, 사용회수를 정하여 농약의 안전사용을 도모하고 독성구분에 따른 공급대상, 사용제한농작물, 수송, 보관, 판매 및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도록 하여 위반시에는 농민의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두어 국민건강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8) 농약의 품질관리

중전에는 농업자재검사소장이 출하전 검사를 실시한 후 출하하도록 함으로써 과다한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고 출하지연으로 저기 공급미흡 검사 모집단의 광대로 인한 모집단의 대표성과 유의성이 결여되는 등

철저한 품질관리가 미흡하였다.

개정 농약관리법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조회사 자체검사체로 전환하고 제조회사 검사인원과 시설을 보강토록 하여 검사모집단을 세분화 자체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품질검사의 정확을 기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체검사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자체검사 책임자를 처벌토록 하였으며 공장과 유통농약에 대한 직권검사와 불량농약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강화하여 품질향상을 도모, 불량농약이 유통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코자 하였다.

9) 농약관리기금의 설치운영

농약의 품목고시를 위한 시험비용과 교육 홍보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약제조업자 수입업자는 농약판매액의 일정율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10) 벌칙 및 부칙

벌칙의 내용은 중전의 규정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그간의 물가상승율에 비추어 벌금액을 상향조정하였다.

부칙에서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이법의 기준에 적합한 요건 및 시설을 갖추어 허가증을 갱신토록 하였다.

<다음호 계속>